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70 발의연월일: 2025. 4. 3.

발 의 자:신영대・이성윤・박희승

홍기원 • 이해민 • 김정호

백선희 • 한민수 • 염태영

박성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친족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를 형사 문제로 처리하지 않고, 가급적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가족과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 범죄가 증가하고, 친족간의 범죄라고 해서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이 덜 하다 는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도 친족간 관계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시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 키는 것이 되고, 가족 구성원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 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의 원칙과 국가의 형별권 보장을 제고하고 친족간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328조·제344조·제365조삭제, 제354조 및 제361조).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 및 제3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4조의 제목 "第354條(親族間의 犯行, 動力)"을 "제354조(동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第328條와 第346條"를 "제346조"로 한다.

제361조의 제목 "第361條(親族間의 犯行, 動力)"을 "제361조(동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第328條와 第346條"를 "제346조"로 한다. 제36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간 범행의 형 면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28條(親族間의 犯行과 告訴)	<u><</u> 삭 제>
① 直系血族, 配偶者,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	
<u>한다.</u>	
② 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32	
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	
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前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前二項을 適	
用하지 아니한다.	
第344條(親族間의 犯行) 第328條	<u><삭 제></u>
의 規定은 第329條 乃至 第332	
條의 罪 또는 未遂犯에 準用한	
<u>다.</u>	
第354條(親族間의 犯行,動力) 第	제354조(동력) 제346조
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	
章의 罪에 準用한다.	
第361條(親族間의 犯行,動力) 第	제361조(동력) 제346조
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	
章의 罪에 準用한다.	
第365條(親族間의 犯行) ① 前3條	<u><</u> 삭 제>

- 의 罪를 犯한 者와 被害者間에 第328條第1項, 第2項의 身分關 係가 있는 때에는 同條의 規定 을 準用한다.
- ② 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本 犯間에 第328條第1項의 身分關 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滅 輕 또는 免除한다. 但,身分關 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例 外로 한다.